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9. 11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이창욱 • ☎ (044) 201-3755, 3765, 4835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건축주의 '셀프 감리' 보도 관련

-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,
 -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 시공에 따른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직영공사 등에 대하여 「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」를 '16.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부는 지난 5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서민 주거 안전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 건축물을 일률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는,
 -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, 실제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기존에는 직영 공사 이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30세대 미만의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,

-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,
- 또한,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)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할 계획입니다.

※ 참고 :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비교

현 행	향후 개선방향
①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 - 주거용 : 200㎡ 이하 - 비주거용 : 200㎡ 이하	<현행과 동일>
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-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(30세대 미만)	②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- 용도는 동일 - <u>도시형 생활주택, 주상복합건축물</u> 추가 (현행 세대수 규정 삭제) - <u>다가구주택, 다중주택</u>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

- 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('19.2월 시행)되면 동작구 사고 건축물(도시형생활주택, 49세대) 유형은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, 경우에 따라서는 2,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< 보도내용 (9.9 동아일보) >

“‘유치원 붕괴’ 원인 감리업체 지정은 누가?...건축주의 ‘셀프 감리’” 보도 관련
 -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자업체 지정 대상을 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‘연면적 2,000㎡ 이하’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, 국토부의 반대로 올 7월 최종 개정안에 빠져 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37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